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16 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4. 3.

발의자 : 남해석

## 1. 수정이유

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3조제1항 중 “폭언이나 폭행 등”을 “폭언·폭행·성희롱·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, 기물파손 등(이하 “폭언·폭행 등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하고,

나.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6. 업무 조정, 부서 재배치, 휴가 등 인사·복무 조치

다. 제11조제2항 중 “60분 이내로 하되, 즉시 결정”을 “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충분한 시간을 즉시 부여”로 함.

라.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폭언이나 폭행 등”을 “폭언·폭행·성희롱·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, 기물파손 등(이하 “폭언·폭행 등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업무 조정, 부서 재배치, 휴가 등 인사·복무 조치

제11조제2항 중 “60분 이내로 하되, 즉시 결정”을 “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충분한 시간을 즉시 부여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안
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은 민원인의 <u>폭언이나 폭행</u> 등으 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  략)</p> <p>제5조(지원사항) 구청장은 민원업 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· 폭행 등으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  략)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 <p>6. (생   략)</p> <p>제11조(지원결정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휴식시간은 <u>60분 이내로 하되, 즉 시 결정</u>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	<p>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 <u>폭언·폭행·성희롱·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, 기물파손 등 (이하 “폭언·폭행 등”이라 한 다.)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업무 조정, 부서 재배치, 휴가 등 인사·복무 조치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11조(지원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충 분한 시간을 즉시 부여</u>---</p> <p><u>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 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</u></p>

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 
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  
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 
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 
준수하여야 한다.